학칙 중 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- 본 대학교 보건실은 대학의 부설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및 각종 상담 업무, 성희롱과 성폭력, 성범죄 예방 교육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부설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책임 행정의 어려움이 있고, 보건실장이 간호학부장을 겸직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간호사 1인이 보건실 업무를 관장 및 담당하고 있어 업무추진의 어려움과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바
- 보건실을 취업복지처 학생복지팀 소속으로 변경하여 보건실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추진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(안)
제49조 (부속 및 부설기관) ① <생 략> ②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.(신설 '98.11.1. 개정 '98.12.1.,'99.4.30.,'99.8.1.,2004.9.1.,2007.6.20.,2009.2.1.,2013.3.1.,2016.1.1.) 1. ~ 6. <생 략> **7. 보건실** 8. 국제교류센터 9. 국방안보연구소 10. 체육관 ③~④ <생 략>	**제49조 (부속 및 부설기관)** ① <생 략> ②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.(신설 '98.11.1. 개정 '98.12.1.,'99.4.30.,'99.8.1.,2004.9.1.,2007.6.20.,2009.2.1.,2013.3.1.,2016.1.1.,**2016. . .**) 1. ~ 6. (현행과 같음) **7. (삭제 2016. . .)** 8. 국제교류센터 9. 국방안보연구소 10. 체육관 ③~④ (현행과 같음)
	부 칙 제1조 (시행일) 본 학칙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